

발송번호: 9-5-2017-046523431

발송일자: 2017.07.03.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등록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주 소

출 원 번 호 40-2016-0119714  
상 품 류 제 16 류

이 출원은 등록결정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68조, 제82조)

참고 : 상표견본이미지



(※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 40-2017-0031245

공고일자 : 2017.03.23

2017.07.03.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심사관 이문희

<< 안내 >>

1. 등록료 및 등록세 등의 납부 마감일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이며, 기간내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추가 30일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납부 기간연장신청을 하시는 경우 2만원의 기간연장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함).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별도의 추가납부기간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료 및 등록세 등

- 등록료 일시납부시 : 211,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211,000원이며, 2012. 4. 1. 출원 건부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함)
- 등록료 분할납부시 : 1회 및 2회 각각 132,000원(상품류구분 1개류마다 각 회차별 132,000원이며,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정상품마다 1,000원을 가산함)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9,120원은 등록료와 함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없음

※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정보 : 총 1개류 [ 제16류 (10개) ]

【 분할납부제도 안내 】

- ① 2010. 7. 28. 출원 건부터 상표등록료의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존 : 10년 1회 일시납부 → 변경 : 10년 1회 일시납부, 5년 2회 분할납부 중 선택납부가 가능
- ②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납부회차란을 ‘1회차’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의 결정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특허청 ☎042-481-5320(담당심사관 이문희)로, 등록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해외출원 안내 】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행사(생산, 판매 등) 또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관련한 등록결정서 발송 안내 】

2017년 4월 1일부터는 특허고객번호, 대리인번호의 (통지서)수취방법이 온라인수령인 경우 이의결정에 따른 등록결정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전자문서로 발송된 통지서를 일주일 이내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표권 설정등록 등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